

대전지방검찰청 2026년 제2회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6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1 임용예정인원 (총 1명)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 예정 인원	채용기간	근무 예정지
방호직	방호서기보	1명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충남 논산시)

※ 검찰청 폐지 등 조직개편으로 근무기관, 근무 예정지 등 변경될 수 있음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방호직	방호서기보	○ 청사 방호, 민원응대 및 일반사무보조 업무 ○ 당직근무 및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7. 30.)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세부 규정은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 7. 10.)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우 대 요 건	직무분야 근무경력	○ 직무분야(방호·보안·경비 등) 관련 1년 이상의 근무경력 *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에 대해 연차별 차등우대 * 원서마감일 기준 역산하여 10년 이내 경력 인정
	직무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신변보호사, 응급구조사(1급·2급) ○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3급) (등급별 차등우대) * 동일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개 제출하는 경우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별 각각 배점
	무도단증	○ 공인무도단증 2단 이상 (단수별 차등우대) * 단일종목 최상위 단수 1개만 인정 * '무도 관련 자격증 인정단체(붙임3)' 참고
	정보화분야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 또는 1급)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종류·등급 상관없이 최고점 1개만 인정

[우대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단증 포함)** 소지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적사항, 자격번호, 발급기관, 발급일자**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자격증은 국내자격증을 의미하며,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요건 세부 내용

직무분야 근무경력	■ 직무분야(방호·경비·경호·보안 등)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역산하여 10년 이내 근무경력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증빙서류 미첨부 시 경력 불인정,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에도 불인정 될 수 있음
	<경력증명서 관련 세부내용> ▶ ①업체(기관)명, ②근무기간,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 ⑤근무형태(상근/비상근 여부, 주당 근무시간), ⑥발행기관의 관인·담당자 성명·연락처가 모두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④담당업무 관련)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별도 첨부 ※ (⑤근무형태 관련) 휴직기간은 우대 근무경력에서 제외되므로,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⑤근무형태 관련)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단시간 근무(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므로, 주 근무시간 기재 시 정확한 시간으로 기재 * 기재 예시: 주 40시간 * 인정 예시: 4년간 주 20시간을 근무→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 위 ①~⑥항이 명시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 증빙 ▶ 현재 재직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로 제출 ▶ 군 경력의 경우, 군 경력(재직)증명서와 별도로 군 경력확인서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군 경력확인서에 관련분야(방호·보안·경비 등) 직무가 적시되어 있을 시 근무경력으로 인정 ※ 단순 군경력은 우대요건에서 제외 ※ 군 경력확인서 미제출 또는 직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폐업회사의 경우, ①'폐업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소득금액증명서, ④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여 경력 입증이 되어야 우대 가능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경력 등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하나에 대하여만 인정
직무관련 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신변보호사, 응급구조사(1·2급) (소지여부에 따른 차등 우대) -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3급) (등급별 차등 우대) ※ 자격증별 각각 배점 ※ 동일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개 제출하는 경우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위 자격증에 한함
무도단증	■ 공인무도단증 2단 이상 (단수별 차등 우대) ※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 중 가장 높은 단수 1개만 인정 ※ '무도 관련 자격증 인정단체(붙임3)' 외의 단증은 인정하지 않음
정보화분야 자격증	■ 전산 및 사무 분야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른 차등 우대)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 복수자격증 소지 시 종류·등급 상관 없이 최고점 1개만 인정 ※ 동일 기관 인증의 동종 자격은 최상위 자격만 인정 ※ 위 자격증에 한함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 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 범위	비고
3명 이하	-	소극적 전형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3명 초과 ~ 50명 이하	7명	적극적 전형
50명 초과	10명	적극적 전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평정요소 】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⑤ 기타 우대사항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아래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업무에 임하는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6. 30.(화) ~ 7. 10.(금)	'26. 7. 8.(수) ~ 7. 10.(금)	'26. 7. 24.(금)	'26. 7. 30.(목)	'26. 8. 14.(금)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대전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026. 7. 8.(수) ~ 2026. 7. 10.(금)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기간 내에 접수처에 등기우편 제출
 ※ 직접방문, 택배, 퀵,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서류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증' 표기
- 접수처: 대전지방검찰청 총무과(308호)
 ※ (우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총무과(308호)
- 응시표는 별도 교부(회송)하지 않고,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응시번호 문자메시지 통보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4'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응시자 기본서류 1부	별지 제1호
	응시원서 1부 (※ 수입인지 포함)	별지 제2호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최종학력 졸업(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사본 1부 (※ 전형위원의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확인되며,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 비공개)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직무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시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전산 및 사무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폐업사실증명서, ②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③소득금액증명서, ④관련분야 근무 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8. 20. ~ '26. 9. 19.

9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채용 예정일: 2026. 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10 안내 및 참고사항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 대전지방검찰청 총무과(☎ 042-470-4543~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방호	방호서기보	1명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충남 논산시)
주요 업무	○ 청사 방호, 민원응대 및 일반사무보조 업무 ○ 당직근무 및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지향, 의사소통 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성실성, 위기대처 능력, 전문성, 전략적 사고력		
필요 지식	○ 청사방호 등 직무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방호 지식 ○ 검찰청 주요 업무 관련 지식 ○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컴퓨터 활용 지식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요건	○ 직무분야(방호·보안·경호·경비 등) 관련 1년 이상의 근무경력 - 연차별 차등 우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역산하여 10년 이내 근무경력에 한함)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건별 차등우대)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응급구조사(1·2급), 신변보호사 - (등급 차등우대) 소방안전관리자(특급~3급) ○ 공인무도단증 2단 이상 소지자 - 단일종목 중 최상위 단수 1개만 인정 ○ 전산·사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종류·등급 상관없이 1개의 최상위 자격증만 인정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1)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8)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카라브마가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세계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무예진흥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붙임 4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서식 제1호, 필수서류)	○ 작성목록(총괄표) 작성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9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정부수입인지를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동봉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필수서류)	○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하단의 날짜, 성명, 서명은 자필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 ※ 증빙자료가 없거나 일부만 기재한 경우 해당 사항 인정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 하단의 날짜, 성명, 서명은 자필 기재
5.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 하단의 날짜, 성명, 서명은 자필 기재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9.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구 분	내 용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 휴학, 재적) 사본 1부 (필수서류)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①업체(기관)명, ②근무기간,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 ⑤근무형태(상근/비상근 여부, 주당 근무시간), ⑥발행기관의 관인·담당자 성명·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위 ①~⑥항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9호>를 활용하여 제출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군 경력의 경우, '군 경력확인서'상(군 경력(재직)증명서와 별도)의 담당업무가 '직무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병으로서 의무 복무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력은 불인정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외에, <u>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및 소득금액증명 등을 확인하는 절차 있음</u>
12.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13.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14.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반드시 단면으로 인쇄하여 제출